



질병관리청



질병관리청

수신 수신처참조

(경유)

제목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안내

1. 우리 청은 「생명공학육성법」 시행령 제12조의2 및 「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」 제17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동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 2. 이와 관련하여 「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」이 개정*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18호
- 가. 개정배경
-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
- 나. 개정사항
- 관계법령 개정 또는 조항 수정에 따른 문구 수정
 - 생물체 신규 추가 및 학명 변경에 따른 정정 등
 - 연구시설 설치기준 문구 수정
3. 아울러 기관장, 연구책임자께서는 개정된 「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」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전문 1부.
 2.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문 1부 끝

질병관리청



수신처 : 유전자변형생물체,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관

선임공무직 **황이랑** 보건연구사 **이민아** 보건연구관 **신정화** 생물안전평가전결02/09
 과장 **신행섭**

협조자

시행 생물안전평가과-507 (2023-02-09) 접수 산학연구팀(천안)-1121(2023.02.10)
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/ http://kdca.go.kr
 로 187, 의료안전예방국 생물안전평가과
 전화 043-719-8053 전송 043-719-8059 / rang2659@korea.kr / 공개
 질병정보 궁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

접수등록번호	산학연구팀(천안)-2010
접수기록물철	대외문서 접수/ 발송

결재 ★팀장 **권오길** 팀장 **권오길**

